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1년 2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산업기술시장과장 강혁기, 김명화 주무관(02-2110-5480)		

녹색인증 기업에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

- 중소기업 녹색인증 부담 완화를 통한 인증 수요 확대 -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 최중경)**는 2.15일 녹색인증**을 **취득한 중소기업**이 **부담한 성능시험 검사*비용을 지원**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함

○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**경제적 부담****을 **경감해** 줌으로써 **인증 신청 수요 확대**를 통한 **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제고**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됨

* 성능시험 검사 : 요구하는 규격/조건 이상으로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로서 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수준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검사 필수

** 녹색인증수수료(100만원)에 성능시험 검사비용(평균 200만원) 추가 발생

□ 이는 지난해 8월 11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**「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*」**의 후속 조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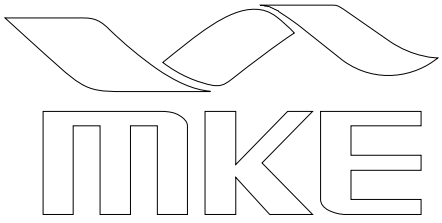
*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, ②판로·마케팅 지원 강화,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,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**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은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분야에 포함**

□ 금번 사업계획에 따라 **녹색기술 인증**을 받은 **중소기업**은 **2회 범위** 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**총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%**(최대 100만원 이하)를 지원받을 수 있음

○ 금일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원장 김용근)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와 성능검사 비용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게 됨

○ 이번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금년도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

□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 및 절차 안내는 녹색인증 홈페이지(www.greencertif.or.kr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 사무국(☎ 02-6009-398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

참고 **녹색인증기업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 공고문**

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-56호

2011년도 녹색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계획 공고

녹색기술 인증신청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2월 15일
지식경제부장관

1 사업목적

○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**중소기업의**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녹색인증 활성화 도모

MKE

2 지원개요

○ **(지원대상)** 녹색기술 인증취득* 중소기업**

*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(부적합 기업은 제외)
*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

○ **(지원내용)** 녹색기술 인증신청 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**성능시험검사*** 비용 일부 지원**

* 同 녹색기술 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써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 6개월이내 또는 접수이후 인증심사 기간(45일)내 발급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
** 녹색기술 인증심의 완료 후 비용신청서 제출(사후 비용 지원)

○ **(지원한도) 총 소요비용의 50%(최대 100만원)/건, 기업당 2회이내**

○ **(신청·접수기간) '11. 2. 15 ~ '11. 12. 31**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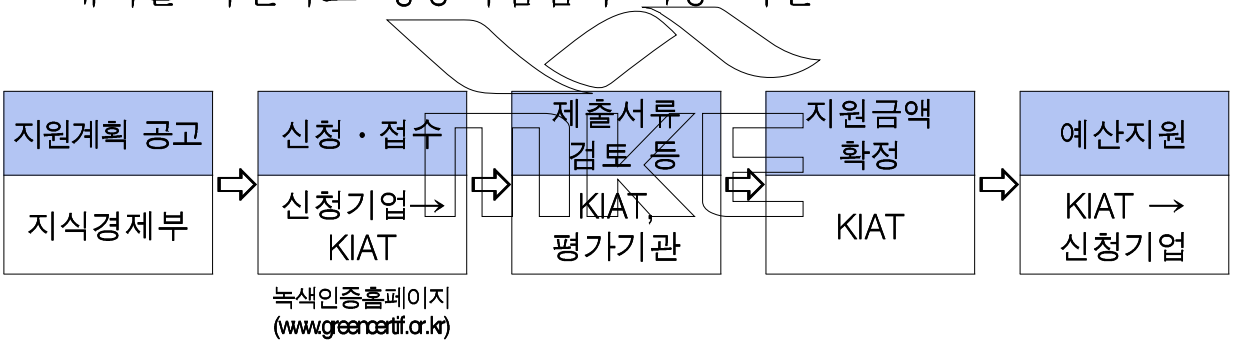
* '11년 1월 1일 이후 접수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

○ **(총 지원예산) 3억원**

○ **(지원시기)** 지원대상자가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

3 추진절차 및 방법

○ 추진절차 : 지식경제부 공고 이후 신청기업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내역을 확인하고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



○ 신청·접수 : 녹색인증홈페이지(www.greencertif.or.kr)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·접수 또는 녹색인증 사무국(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)으로 서류 신청·접수

○ 제출서류 :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,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,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,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

○ 검토 :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금액을 검토 후 비용지원 확정

*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4 사업 수행기관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(☎ 02-6009-3981～3989)

붙임 녹색기술인증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. 끝.

<붙임>

녹색인증 Green Certification

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	처리기한
신청구분		45일

신청자	기 관 명				대 표 자			
	주생산품				업 종			
	종업원수	명	자본금	백만원	매 출 액	백만원	영업이익	백만원
	기관유형	☐ 대기업 ☐ 중소기업(☐ 벤처·이노비즈 ☐ 기타) ☐ 국·공립 연구기관 ☐ 정부출연(연) ☐ 대학 ☐ 개인사업자 ☐ 기타						
	주 소					사업자 등록번호		
	실무 책임자	소 속		직 위		성 명		
		전 화 (휴대전화)	()	팩스		전자우편		
성능시험	인증 기술명				인증번호		접수일자	
					평가기관		인증일자	
	비용지원 신청내역	성능시험검사 명칭(내용)			발급지관	발급일	소요비용	적정성
								평가기관
								작성
	* 적정성 : 녹색기술인증 적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성능시험검사서에 대한 확인				신청비용 합계 :		원	

「녹색인증제 수행 지침」에 의한 녹색기술인증 성능시험검사 지원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: (인)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

구비서류		수수료
	1.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 2.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 3.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	없음

참고 2 녹색인증 활성화 대책(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)

지원혜택		세부내용	시행현황
1. 녹색 산업 융자 지원 확대	1-1.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 우대	신재생에너지설비, 농업종합자금 등	융자운영지침 개정('10.12) 및 시행 ('11.1)
	1-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	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	(시행)'10.6
	1-3.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	보증료율 0.5%p 감면, 한도 70억원(추가 3억원)	Green Hi-Tech특례보증 시행('10.6)
	1-4. 수출금융(특례신용대출) 우대	평가시 가점(10점), 업체별 한도30억원	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 ('10.10)
	1-5.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	보험료할인 20%, 보증한도 2배	상품개발 및 관련내규 개정('10.8)
2. 판로·마케팅 지원 강화	2-1. 정부발주공사 우대	신인도평가 가점, 선금지급 확대, 계약보증금 감면	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('10.12) 회계예규 개정('11.2)
	2-2. 공공구매/ 국방조달심사 우대	조달청(1.5점), 국방부(0.5점)	조달청 관련 규정개정 및 시행('10.9) 국방부 신인도가점 규정 개정('11.1)
	2-3. TV·라디오 광고료 70% 면제	지상파 3사 & DMB	광고료 70% 면제 시행('10.9)
	2-4.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	신청시 가점(10점)	해외전시회 지원 업무규정 개정('10.12)
	2-5.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	신청시 가점(5점)	중기청 관련사업 운영지침 개정('10.12)
	2-6.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	신청시 가점(5점)	중기청 관련 운영지침 개정('10.12)
	2-7.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	신청시 가점(5점)	
	2-8.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	신청시 가점(10점)	
	2-9.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	우선 선정(재무건정성 충족 시)	Green보증브랜드 선정('11.5)
	2-10.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	수출액,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(최근 1년간 수출액 200만불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)	관련 운영지침 개정('10.12)
3.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	3-1.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	교과부 추천시 가점 부여	선정 & 가점 적용방안 마련('10.12)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('11.6)
	3-2.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	신청시 가점(5점)	관련 사업 운영지침 개정·시행('11.1)
	3-3. 출연연 석·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	신청시 가점 부여	시행('11.3)
	3-4.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	인증취득시 성능시험 검사비용 50% 환급	공고 및 시행('11.2)
	3-5.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	참여시 가점(2점)	공고 및 시행('11.5)
4.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	4-1. 국가R&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	부처별 R&D사업 가점, R&D수행시 간접비 활용	공고 및 시행('11.1)
	4-2. 특허우선심사(초고속심사대상)	특허우선심사(최대 1개월까지 단축)	우선 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·시행('10.4)
	4-3.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	5점 가점 (1인당 5건, 건당 700만원 이내)	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·시행('11.3)
	4-4. 기술이전·투자유치 설명회 개최	기술공급자·수요자, 거래기관 등 참여	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('11.3)
	4-5.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	현지마케팅, 수요기업알선, 전문컨설팅 등	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상시 글로벌 사업화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(연중)
	4-6. 국제컨퍼런스 개최(GGGI 연계)	국내외 평가기관, 투자기관 참여	국제 컨퍼런스 개최('11.6)